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임혜숙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5G 특화망 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

3. 주요내용

5G 특화망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사업 중 일부 유형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등록결격(제7조), 외국인 지분제한(제8조) 등의 적용을 면제하고,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(제18조), 이용약관 신고 등(제28조)의 적용에 있어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“제1호바목에 따른 구내통신사업”을 “제1호 바목에 따른 구내 통신사업, 일정한 구역(건물 등) 내에서 4720~4820MHz, 28.9~29.5GHz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(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전파법」 제20조에 따른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)가 제3자에게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무선국을 구축·운영하는 사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등록의 결격사유) 법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”이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,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(별표 1 제1호바목에 따른 구내통신사업은 제외한다. 이하 “회선설비 보유사업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	제11조(등록의 결격사유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제1호 바목에 따른 구내통신사업, 일정한 구역(건물 등) 내에서 4720~4820MHz, 28.9~29.5GHz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(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전파법」 제20조에 따른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)가 제3자에게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무선국을 구축·운영하는 사업----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2 - 6625